

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114 |
|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2. 7. 19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가. 부패방지법의 제정시행(2002. 1. 25)으로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청구인의 수가 300인으로 규정됨에 따라

나.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시 감사청구인의 수는 우리군은 위 조례에서 위 청구인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감사 청구인의 수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위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하향조정 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: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→200명 이상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
-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법 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200명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의수) 법 제13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<u>법 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</u> 이어야 한다.</p> | 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의수) ----- ----- ----- ----- --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.</p> |